
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      | <b>보 도 자 료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배포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9. 4. 15.(월) / 총 3매(본문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당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설산업과 | 담 당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과장 박정수, 사무관 김학원, 주무관 김보민<br>• ☎ (044) 201-3509, 3511 |
| 보 도 일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2019년 4월 16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br>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16.(화) 06:00 이후 보도 가능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건설공사 현장에서 “버리는 흙 재활용” 의무사용 확대

- ◆ 국토부, 「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」 개정 고시
- ◆ 기존 시스템 의무사용 국토부 소속·산하기관→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
- ◆ 최근 3년간 시스템 활용 통한 토석자원 재활용 1,200만<sup>m</sup>(25톤 트럭 75만 대)
- ◆ 사회경제적 편익 총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

□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(부족한 흙), 사토(버리는 흙)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. 이에 따라 토석자원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.

- 또한,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처리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국토의 훼손 방지, 온실효과 저감 등 사회적 편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「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」 개정 고시를 통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(TOCYCLE)의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·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.

\* “발주청”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, 준정부기관, 지방공사, 지방공단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(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)을 말한다.

<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사용기관 >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| 확 대 (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○ 국토교통부<br>(소속 및 산하기관 포함) | ○ 국토부 이외 정부기관<br>○ 공기업, 준정부기관<br>○ 기타 공공기관(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) |
| ○ 지방자치단체<br>○ 지방공사·공단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※ 민간발주자는 자율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□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·관리하여,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함으로써 토석의 구매·폐기 비용 등 관련예산을 절감토록 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구축되어 운영 중이다.

○ 최근 3년간 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용된 토석은 약 1,200만<sup>m</sup>³에 달하고, 이는 25톤 덤프트럭 75만대가 넘는 분량으로써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편익은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<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실적 >

(단위 : <sup>m</sup>³, 억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| 합 계        | 2016년      | 2017년      | 2018년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반입량( <sup>m</sup> ³) | 6,843,984  | 2,465,634  | 1,999,795  | 2,378,555  |
| 반출량( <sup>m</sup> ³) | 4,875,135  | 1,946,897  | 1,255,262  | 1,672,976  |
| 합 계( <sup>m</sup> ³) | 11,719,119 | 4,412,531  | 3,255,057  | 4,051,531  |
| 편 익(억)               | <b>664</b> | <b>250</b> | <b>184</b> | <b>230</b> |

\* 편익은 토석 채취비용, 운반비, 환경오염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정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, 사회적 편익을 확대할 것”이라면서, 앞으로도 시스템 활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학원 사무관(☎ 044-201-350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참고

##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개요

- 토석정보공유시스템(www.TOCYCLE.com)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(부족한 흙), 사토(버리는 흙)의 정보를 공개유통하기 위한 시스템
  - \*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(土石)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여야 함(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)
  - 순성토·사토의 설계량, 발생량을 체계적·종합적으로 관리하고, 수요자 대상의 정보공개유통을 통해 토석자원의 재활용 체계 확립
  - 설계 → 시공 → 준공단계별 정보를 입력하고, 토석자원이 필요한 발주자, 시공사 등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 조회 및 상호 공유

### <토석정보공유시스템 개요도>



### ※ 최근 5년간 사용자 등록현황

| 구 분          |      | 2014년  | 2015년  | 2016년  | 2017년  | 2018년  |
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사용자수<br>(누계) | 합계   | 13,351 | 15,100 | 16,887 | 18,805 | 20,862 |
|              | 공공기관 | 4,232  | 4,775  | 5,354  | 5,945  | 6,607  |
|              | 민간업체 | 8,428  | 9,469  | 10,543 | 11,640 | 12,851 |
|              | 기타   | 691    | 856    | 990    | 1,220  | 1,404  |
| 신규 등록 사용자수   |      | 1,473  | 1,749  | 1,787  | 1,918  | 2,057  |